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05시 50분



목차

목차	2
저소득층의료급여제도	3
의료급여	3
수급권자 유형	3
1종 수급권자	3
2종 수급권자	3
의료급여 신청방법	3
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	4
의료급여 진료절차	4
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	5
급여일수의 상한	5
연장승인 제도	5
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	5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	저소득층의료급여제도	긴급복지	노숙인발생처리 및 귀가조치
영구임대아파트 현황	이재민구호비지급기준	기부식품제공	위기가구 사례관리
기초수급 맞춤형 급여 및 현황	자활사업안내	지역사회복지자원 현황	의료급여대상자 현황
국민건강보험료 지원	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 융자	복지서비스 모의계산 ㄱ	복지시설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	희망성금모금		

의료급여
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

수급권자 유형

1종 수급권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- › 근로무능력가구,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 등 록자, 시설수급자
- 행려환자
- 타법적용자
 - › 이재민, 의상자및의사자유족, 임양아동(18세 미만)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·18 민주화 운동 관련자, 노숙인
- *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

2종 수급권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-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

의료급여 신청방법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(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,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)에 연중 신청

*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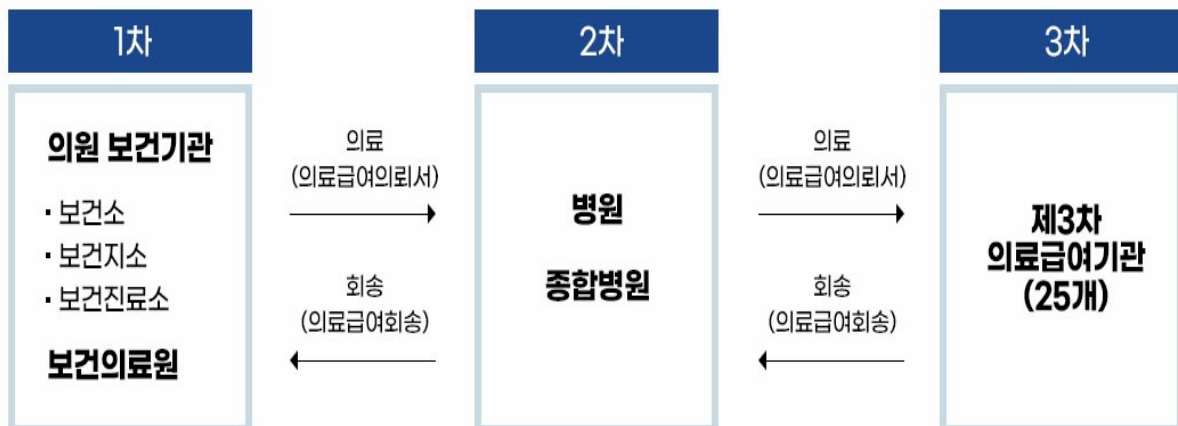
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

-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, [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]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본인부담금

구분		1차(의원)	2차(병원, 종합병원)	3차(상급종합병원)	약국(처방전)	특수장비촬영(CT, MRI, PET)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	없음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	5%
2종	입원	10%	10%	10%	-	10%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	15%

의료급여 진료절차

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(의원, 보건소)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, 제 2차(병원, 종합병원) 또는 제 3차(지정병원)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->2차->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
- 의료기관 중복방문,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 일수 초과자는 선택병·의원을 지정 이용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기관 선택 원칙, 선택병의원 이외의 기관 방문 시에는 선택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의뢰서 필요



※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하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

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

↳ 급여일수의 상한
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·중증난치질환(결핵 포함) :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
-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(만성고시질환) :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
- 이 외 기타 질환 : 모두 합산하여 400일

↳ 연장승인 제도

-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(연장승인)을 받아 75-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

↳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

-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